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관광진흥과-5071
등록일자	2015.3.30.
결재일자	2015.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주무관	관광진흥팀장	관광진흥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직무대리	구청장
정태숙	신호진	박희수	문경수	주윤중	03/31 신연희
협조자	규제개혁법제팀장 박도규				

- 강남구 관광역건 개선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개정 계획



■ 건 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개정

■ 개정사유

-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특구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시행 및 지원근거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띄어쓰기, 법규 용어 등 정비

■ 주요내용

- 관광특구 조항 신설
 - 관광특구의 위치 및 대외적 표시 지정
 - 관광특구의 진흥계획
 -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 관광특구 내 특화사업의 소요재원 및 위탁
- 기타 조항 신설 및 문장 내용 정비 등
 - 홍보마케팅 조항 신설
 - 외국인홍보단 운영 조항 신설
 - 관광객 유치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 확대
 - 관광자문위원회 기능에 ‘관광특구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추가
 - 제4장(관광정보센터 설치) 명칭 수정
 - 제6장과 제7장 순서 맞교환 배치 등

강 남 구
(관광진흥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관광진흥법 제70조 ~ 제74조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47호 및 관광정책과-13948(2014.12.2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4.12.18.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 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47호)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 검토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민, 강남구 소재 기업·단체·사업장 종사자, 강남방문 내·외국인 등
분야 별 검토사항 (계속)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① 관련부서 협조 ----- (O)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O)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관련부서(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보육지원과) 검토완료
타 기관 사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개정 계획

2014. 12.18일자로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I 개정근거

- 관광진흥법 제70조 ~ 제74조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47호 및 관광정책과-13948(2014.12.2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

II 개정경위

- (제 정) 2013. 04. 05 조례 제1129호
- (일부개정) 2014. 07. 04 조례 제1204호

III 개정사유

-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특구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시행 및 지원근거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띄어쓰기, 법규 용어 등 정비

IV 주요내용

- 관광특구 조항 신설
 - 1) 관광특구의 위치 및 대외적 표시 지정(안 제14조)
 - 2)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안 제15조)
 - 3)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안 제16조)
 - 4) 관광특구 내 특화사업의 소요재원 및 위탁 (안 제17조)

□ 기타 조항 신설 및 문장 내용 정비 등

- 1) 홍보마케팅 조항 신설 (안 제4조)
- 2) 외국인홍보단 운영 조항 신설 (안 제5조)
- 3) 관광객 유치 지원대상 범위 확대 (안 제6조)
 - 지원대상 사업주체에 ‘민간기업’ 추가
 - 지원대상 사업범위에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경우’ 추가
- 4) 제4장(관광정보센터 설치) 명칭 수정
 - ‘관광정보센터 설치’ → ‘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 5) 제6장과 제7장 순서 맞교환 재배치
 - 제6장을 ‘관광진흥자문위원회’로 하고, 제7장을 ‘한옥체험관 관리 및 운영’으로 배치
- 6) 관광자문위원회 기능에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19조 2호)
- 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한옥체험관의 관리권 및 운영권의 양도 및 제공에 대한 내용 정비 (안 제34조 제3항)
 -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수탁자가 타인에게 전대가 아닌 권리의 양도, 담보 제공은 불가능하므로, ‘구청장의 승인 없이’ 문구 삭제

V 추진경과

구 분	날 짜	통보내용	주관부서	비 고
규제유무 사전검토	2. 3	규제유무 해당없음	기획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2.13	원안동의	보육지원과	보육지원과-6680호
부패영향평가	2.16	원안동의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2691호
입안심사	3.18	입안심사결과 전부개정안(※) 통지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4267호

※ 개정조례안 신설조항 : 제4조, 제5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 **현행조례의 제4조 ~ 제33조 : 조이동(조번호 변경)**
 ⇒ **전부개정** 추진 (☞ 개정내용이 전체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개정”으로 처리)

VI 향후일정

구 분	날 짜	추진내용	주관부서	비 고
입법예고	4.3~4.23	20일 이상 의견수렴	관광진흥과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5월중	관광진흥과 →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5월중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구의회 상정	5월말	구의회 의결 요청	기획예산과	의회 개최 10일전
구의회 의결	6월중	구의회 의결	의회사무국	
서울시 사전보고	6월중	사전보고	기획예산과	의회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조례공포	6월말~7월초	구보 등에 게재	기획예산과 공보실	

VII 행정사항

- 입법예고 시 구보(매주 금요일 발행) 및 인터넷 게재 별도요청
: 공보실, 전산정보과
- 구의회 사전설명 및 구의회 전문위원과 사전협의 추진

붙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